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 호

「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680호, 2015.9.11.)  
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」 일부개정(안)

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6조제7항”을 “제74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제56조제4항”을 각각 “제7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제56조제5항”을 각각 “제74조제4항”으  
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9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제56조제5항”을 “제7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56조제6항”을 “제74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9조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 
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  
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6조  
제3항”을 “제7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56조제5항”을 “제74조제5항”으로, “제56조제6항”을 “제74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제목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 본문)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철도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<u>제56조제7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<u>제74조제7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철도표준규격의 확인)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<u>제56조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<u>제56조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관련 단체·기관·학계·연구소 또는 생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	<p>제4조(철도표준규격의 확인) ①----- ----- <u>제74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제74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이 경우 의견 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규격안의 처리) ① 규칙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"이해관계인"이라 한다)가 철도표준규격의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서(이하 "의견서"라 한다)를 제출할 때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 소요(준비기간을</p>	<p>제5조(규격안의 처리) ①----- 제74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제74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----- -----제74조제5항----- ----- -----30일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포함한다)되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분석 및 시험) ①~③ (생략) ④규칙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이해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분석 및 시험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---제74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공청회의 개최)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규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 심의의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공청회의 개최) ----- ----- -----제74조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심의) ①~② (생략) ③ 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(이하 "심의완료통지서"라 한다)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</p>	<p>제9조(심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



현행	개정안
<p>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「</u> <u>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3조제2</u> <u>항제8호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</u> <u>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</u> <u>고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</u> <u>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</u> <u>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